



## \* 등급정보 (닭고기) \*

▷ 22개 업체에서 생산한 375만1천수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1\*등급은 139만1천수(37.1%), 1등급은 234만5천수(62.5%)를 차지. 전월대비 70만수(15.7%) 감소, 전년동기(20개 업체, 334만6천수) 대비 40만5천개(12.1%) 증가, 금년누계는 2천578만5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557만천개(27.6%) 증가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10년 1~ 7월	25,784,823 (100.0)	9,977,307 (38.7)	15,603,274 (60.5)	204,242 (0.8)
10년 6월	4,451,711 (100.0)	1,751,034 (39.3)	2,654,177 (59.6)	46,500 (1.1)
10년 7월	3,750,529 (100.0)	1,390,930 (37.1)	2,345,139 (62.5)	14,460 (0.4)

주) 2007.3.26일부터 닭고기 등급판정 재개

## \* 축산뉴스 (닭고기) \*

### 1 가금산업발전협의회 강력 항의, “법적 허용 기준치 이하” 주장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항의 의사를 밝히며 “우리나라 엔로플록사신 기준치는 0.1ppm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에서 검출된 엔로플록사신은 기준치 이하인 0.003ppm”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엔로플록사신의 가금류 육류의 기준치는 가금근육 0.1ppm, 가금류 간 0.2ppm, 가금류 지방 0.1ppm, 가금류 신장 0.3ppm으로 현재 법적허용 약품으로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엔로플록사신 검출량 0.003ppm은 1천톤에 3g에 해당하는 극히 미비한 양으로 이 정도 검출량은 무항생제 닭의 기준에도 적합할 정도로 안전한 기준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모임의 보도자료로 인해 대형마트 등에서는 닭고기를 철수하는 등 양계농가, 업체 피해가 심각하다”며 “닭고기 항생제 검출 건에 대해

농림부와 식약청 등에 의뢰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 2 배달 치킨도 원산지 표시

막걸리와 배달용 치킨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8월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현재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도 의무품목에 포함된다.

또 음식점의 면적이 100㎡ 이상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던 쌀, 배추김치도 음식점 면적에 상관없이 6만5천여 개 가량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